

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 현 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15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22.

발 의 자 : 김현진, 고찬양, 박학용,
김지수, 김순옥

1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이 정의와 용어를 정비하고, 평생학습관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,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를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문자해득교육’이 ‘문해교육’으로 변경되고, 평생교육의 정의에 ‘성인
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’이 포함되어 조례를 정비함(안제2조제1호)
- 나. 평생학습관 설치·지정·운영 의무자가 ‘시·도교육감’에서 ‘시장·군수·
자치구의 구청장’까지 확대되어 의무규정으로 개정함(안제12조제1항)
- 다.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조건 중 자녀의 수를 두 명 이상으로 변경함
(안제18조의2제2항제6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협조부서 : 교육지원과

다. 입법예고 : 2024. 1. 22. ~ 1. 27.

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”을 “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8조의2제2항제6호 중 “18세 이하의 자녀가 세”를 “자녀가 두”로, “모”를 “모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호와 제12조제1항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, 성인 <u>문자해득교육</u>, <u>직업능력 향상교육</u>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제12조(설치)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,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<u>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8조의2(수강료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의2(수강료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<p>6. <u>18세 이하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, 모 또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</u></p> <p>7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6. <u>자녀가 두</u> ----- ----- <u>모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인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</u> ----- --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□ 「평생교육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. 28., 2021. 6. 8., 2023. 4. 18., 2023. 6. 13.>

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21조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 및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4. 18.>

□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5.3, 2020.1.9, 2023.7.18, 2023.12.29>

2. “다자녀 가족”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(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)을 말한다.
4. “다둥이 행복카드”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.

□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2. “다자녀가정 우대카드”란 서울특별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.